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사능방재 교육대상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이수, 유예 등에 관한 근거를 총리령·부령에 직접 규정하여 그 법령상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등 3개의 총리령·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법령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0. 00. ~ 11.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제1조(「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의 개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방사능방재”를 “방사능방재에 관한 교육(이하 “방사능방재교육”이라 한다)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방사능방재교육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시간에 상응하는 방사능방재교육을 해당 연도에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외국기관에서 시행한 교육으로서 방사능방재교육의 담당 직무별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내용과 관련된 교육
2. 방사능방재와 관련된 국내 유관기관에서 시행한 교육으로서 방사능방재 교육의 담당직무별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③ 방사능방재교육 대상자가 국내외 파견근무 등 방사능방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방

사능방재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사능방재교육 대상자의 세부분류, 교육방법 등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제19조 관련)”을 “(제19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제2조(「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1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50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원자력통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으로서 별표 6에 따른 교육내용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영 별표 9 제2호 각 목에 따른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원자력통제교육과 동등한 교육을 이수하였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④ 영 제150조제1호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받아야 하는 원자력통제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받아야 하는 원자력통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⑤ 영 제150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까지 원자력통

제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매우 곤란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대상자의 세부 분류, 교육방법, 교육계획 수립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축산법 시행규칙」의 개정)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방사능방재 교육시간 및 내용) 영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u>방사능방재 교육시간</u> 및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제19조(방사능방재 교육시간 및 내용) ① ----- ----- <u>방사능방재에 관한 교육</u> (이하 “ <u>방사능방재교육</u> ”이라 한다)의 -----.
<신 설>	② <u>방사능방재교육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시간에 상응하는 방사능방재교육을 해당 연도에 이수한 것으로 본다.</u>
	1. <u>외국기관에서 시행한 교육으로서 방사능방재교육의 담당 직무별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내용과 관련된 교육</u>
	2. <u>방사능방재와 관련된 국내 유관기관에서 시행한 교육으로서 방사능방재 교육의 담당 직무별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u>
<신 설>	③ <u>방사능방재교육 대상자가 국내외 파견근무 등 방사능방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기</u>

<u><신 설></u>	<u>전까지 방사능방재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사능방재교육 대상자의 세부분류, 교육방법 등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u>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1조(원자력통제교육) ①·② (생략) <u><신설></u>	제141조(원자력통제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영 제150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원자력통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u> <u>1.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으로서 별표 6에 따른 교육내용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u> <u>2. 영 별표 9 제2호 각 목에 따른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u> <u>3. 그 밖에 원자력통제교육과 동등한 교육을 이수하였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u> <u>④ 영 제150조제1호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받아야 하는 원자력통제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받아야 하는 원자력통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u>
<u><신설></u>	

<신 설>

③ (생 략)

<신 설>

⑤ 영 제150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까지 원자력통제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매우 곤란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대상자의 세부분류, 교육방법, 교육계획 수립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수정사시험) ① ~ ④ (생 략) <u><신 설></u> <u>⑤</u> (생 략)	제16조(수정사시험) ① ~ ④ (현 행과 같음) <u>⑤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 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u>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